의안번호	2209837
의 뢰 인	한병도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6.
추계번호	25F233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규정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, 2027년 201억원, 2035년 101억원 등 2027년부터 2035년까지 9년간 총 3,619억원(연평균 40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: 2027~2035년까지 9년간 총 2,808억원(연평균 312억원) 감소

○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의2제1항): 2027~2035년까지 9년간 총 811억원(연평균 90억원) 감소

○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기업 또는 본사에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은 최대 7년(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) 동안 적용되어, 2028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본사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5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, 2027~2035년

(단위: 억원)

	’27	’28	’29	’30	’31	’32
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	−156	−312	−468	−468	−468	−390
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의2제1항)	−45	−90	−135	−135	−135	−113
계	−201	−402	−603	−603	−603	−503

	’33	’34	’35	누적	연평균
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	−312	−156	−78	−2,808	−312
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의2제1항)	−90	−45	−23	−811	−90
계	−402	−201	−101	−3,619	−402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3조제1항 (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(중소기업은 2년)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– 감면율 ① 수도권 내(중소기업한정),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 ②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: 7년 100% + 3년 50% ③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%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.	
2	안 제63조의2제1항 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– 감면율 ①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 ②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 : 7년 100% + 3년 50% ③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%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3조제1항 (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	
2	안 제63조의2제1항 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○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의 경우 이전지역별 감면기간을 감안하여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4년(2021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의 경우 2024년 감면액의 잠정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

-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(7년 100% 감면, 3년 50% 감면)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
○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(5년 100% + 2년 50%)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-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(7년 100% + 3년 50% 또는 10년 100% + 2년 50%)[1]은 고려하지 않음
-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
❑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·소득세 감면

○ 감면요건: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(중소기업은 2년) 계속하여 공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

1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

-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었으나, 2021년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
-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됨

○ 감면내용: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법인·소득세 감면

- 수도권 내(중소기업한정),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
-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 : 7년 100% + 3년 50%
-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%
- 단, 2022년까지는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% 감면, 이후 3년간 50% 감면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)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
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

❑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2021년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의 실적을 살펴봄
○ 2021~2024년(잠정) 법인세 감면액 평균: 1,092억원
○ 2021~2024년(잠정) 소득세 감면액 평균: 240억원

[표 2]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(잠정)[1]
계	2,052	1,192	1,279	805
법인세	1,799	928	1,029	610
소득세	253	264	249	195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최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액의 평균을 바탕으로,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각각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○ (법인세)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64억원* + 100% 감면액 128억원**

* 64억원 = 1,092억원 ÷ 17 (7년 × 2 + 3년)

** 128억원 = 64억원 × 2

–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(7년 100% 감면, 3년 50% 감면)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
○ (소득세)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14억원* + 100% 감면액 28억원**

* 14억원 = 240억원 ÷ 17 (7년 × 2 + 3년)

** 28억원 = 14억원 × 2

○ 공장을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(5년 100% + 2년 50%)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–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(7년 100% + 3년 50% 또는 10년 100% + 2년 50%)[2]은 고려하지 않음

[표 3] 연도별 법인·소득세 감면 예상액: 2027~2035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2026년 이전법인	−156	−156	−156	−156	−156	−78
2027년 이전법인		−156	−156	−156	−156	−156
2028년 이전법인			−156	−156	−156	−156
계	−156	−312	−468	−468	−468	−390

구분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2026년 이전법인	−78				
2027년 이전법인	−78	−78			
2028년 이전법인	−156	−78	−78		
계	−312	−156	−78	−2,808	−312

2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

(3) 추계결과

❑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·소득세는 2027년 156억원, 2035년 78억원 등 2027년에서 2035년까지 9년간 총 2,808억원(연평균 31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2028년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5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, 2027~2035년

(단위: 억원)

	'27	'28	'29	'30	'31	'32
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	−156	−312	−468	−468	−468	−390

	'33	'34	'35	누적	연평균
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제1항)	−312	−156	−78	−2,808	−312

나.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3조의2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개요)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

○ 감면요건: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

-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 공장·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었으나, 2021년부터 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

○ 감면내용: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

-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
-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 : 7년 100% + 3년 50%

-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
- 단, 2022년까지는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본사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% 감면, 이후 3년간 50% 감면(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)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
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

❑ (감면실적)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실적은 2021년 기준 3,032억원, 2024년(잠정치) 3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

○ 2021년부터 '공장·본사 이전'에서 '본사 이전'으로 조정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의 실적을 살펴봄

○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임

[표 5]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

연도	2021	2022	2023	2024(잠정)[1]
감면액	3,032	2,993	727	383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감면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[3]이므로 2024년 잠정치를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○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23억원* + 100% 감면액 45억원**

* 23억원 = 383억원 ÷ 17 (7년×2 + 3년)

** 45억원 = 23억원 × 2

○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(5년 100% + 2년 50%)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-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(7년 100% + 3년 50% 또는 10년 100% + 2년 50%)[4]은 고려하지 않음

3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르면 2025년 감면실적의 전망치 역시 401억원으로 2024년 잠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2024년 잠정치를 기준으로 추계

[표 6] 연도별 법인세 감면 예상액: 2027~2035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2026년 이전법인	−45	−45	−45	−45	−45	−23
2027년 이전법인		−45	−45	−45	−45	−45
2028년 이전법인			−45	−45	−45	−45
계	−45	−90	−135	−135	−135	−113

구분	2033	2034	2035	누적	연평균
2026년 이전법인	−23				
2027년 이전법인	−23	−23			
2028년 이전법인	−45	−23	−23		
계	−90	−45	−23	−811	−90

(3) 추계결과

❑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45억원, 2035년 23억원 등 2027년에서 2035년까지 9년간 총 811억원(연평균 9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2028년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5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5년

(단위: 억원)

	’27	’28	’29	’30	’31	’32
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63조의2제1항)	−45	−90	−135	−135	−135	−113

	’33	’34	’35	누적	연평균
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63조의2제1항)	−90	−45	−23	−811	−90

4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